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이유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시민혼란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것임

## 2. 주요골자

- 동절기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 까지를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함 (안 제13조 제1항)

※ 동절기 :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달 까지

##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기타 복무사항 조례에 위임)

## 4. 검토의견

### 본조례 개정건은

- 주 5일제의 시행목적이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토요일 휴무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3년이래 41여년간 시행되어온 동절기 근무시간을 개정하게 되면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 고유가시대 에너지 낭비로인한 예산 과다지출과 동절기 일몰 이후는 민원인의 방문이 극히 미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근무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

하르르써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입법권 제한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기존 근무시간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근무시간을 개정한 부산시 행정구역내 소재하는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무시간이 상이하게 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일반제증명 민원등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므로 1시간 연장근무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됨.

- 따라서 위 조례 개정건은 민원해소와 행정실익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